

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

| 구분 |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| 판단기준 |
|----------|---|---|
| 대상 업종 | (25***) 금속가공제품제조업 (23***)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(10***) 식료품제조업 (16***)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(가구제외) (22***)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(24***) 1차금속제조업 (29***)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(30***)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(32***) 가구제조업 (33***) 기타제품제조업 (20***)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(의약품제외) (261**) 반도체제조업 (262**) 전자부품제조업 | 좌측 13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☞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☞ “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”의 증설,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되는 경우 ☞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되는 규모의 “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”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|
| 대상 설비 |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 전체환기장치, 밀폐설비 | ☞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인 가열 용해로 ☞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50kg/h 또는 50kW/h이상인 인화성 증기·분진 발생 설비 ☞ 특수화학설비이면서 안전보건기준규칙[별표9] 기준량이상 제조·취급하는 경우 ☞ 인화성가스 집합량 1,000kg 이상인 용접·용단용 고정식 가스집합장치 ☞ 배풍량이 60㎥/min 이상이면서 안전검사 대상 49종 유해물질 밀폐·제거하는 경우 ☞ 배풍량이 150㎥/min이상이면서 그외 허가·관리 대상 유해물질, 분진작업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는 경우 |